

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

사업장명(상호)	대표자 성명	업종	근로자 수
주소		전화번호	
신규화학물질 명칭			
조사결과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		
	그 밖의 사항		
	유해성·위험성 분류	그림문자와 신호어	
	유해·위험 문구	예방조치 문구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고용노동부장관

직인